

조선후기 靈幄殿 기능수용에 따른 정자각 평면변화 고찰¹⁾

신 지 혜

(경기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주제어 : 산릉도감의궤, 영악전, 정자각, 왕릉, 숙종, 국조상례보편, 승릉

1. 머리글

본 연구는 조선후기 산릉도감의궤를 바탕으로 영악전¹⁾이라는 임시건물의 기능을 정자각이 수용하게 되는 계기와 그에 따른 정자각 평면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자각은 고려 왕릉부터 긴 역사동안 산릉의 중심 건물로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²⁾ 건축사 분야에서 산릉을 연구할 때 정자각은 주요한 대상이 된다. 근래에 조선왕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현존하는 건물의 유형분석³⁾이 행해졌으나 산릉의궤를 바탕으로 현존 건물의 유

형분류를 넘어서, 국장과정에서 정자각의 문제를 다루기 시작하였다. 최근 연구성과에 의해 정자각의 형태가 다양⁴⁾했으며, 기능에 따라 내부 배설⁵⁾이 달라짐을 확인하게 되었다. 또한 왕과 왕후의 함장일 경우 정자각을 대신하여 삼년상을 지내는 가정자각의 존재에 대한 연구⁶⁾ 등이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를 통해 정자각에 대한 다양한 접근이 가능해졌으나, 아직 정자각의 구체적 기능과 건물 형태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자각은 고려시대부터 조선후기까지 변화되고 있었다. 특히, 조선후기가 되면서 인산(因山)⁷⁾기간 중에 필요로 하는 임시건물의 조성규모를 줄이려는 시도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정자각은 영악전이라는 임시공간의 기능을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과학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 R01-2007-000-20464-1)

1) 영악전(靈幄殿): 왕이나 왕후 등의 제궁을 안치하는 산릉의 악차(輿次)를 말한다. 이는 『국조오례의』 「홍례」에서 영장전(靈帳殿)이라는 명칭으로 기능을 알 수 있으며, 명종대 이후 악차라기보다 전각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한 듯 하며 선조 이후 남겨진 산릉의궤에서 전각의 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김동욱, 「조선조 산릉 정자각의 연원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 pp121~126, 2008.5, 국립문화재연구소, 『강화고려왕릉』, 2007

3) 최윤화, 「조선시대 능원 정자각의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년

4) 김왕직, 「조선왕릉 8칸 정자각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 pp237~244, 2008.5

5) 정정남, 「조선후기 산릉의궤를 통해본 정자각의 도배와 포진」, 한국건축역사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 pp117~120, 2008.5

6) 홍석주, 「정자각과 가정자각의 조성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 pp145~150, 2008.5

7) 인산(因山): 왕과 왕후 외에 대비, 왕세자, 세자빈 등의 장례(葬禮)를 말하는데, 본 글에서는 좁은 의미에서 인산을 국장 절차 중에 빈전에서 산릉을 출발하여 빈전이 하현궁(下玄宮)하고 반우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논문

수용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정자각의 평면변화의 중요한 요인이 영악전 기능 수용에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2장에서는 영악전과 정자각의 각 기능과 내부 활용에 대해 살펴보고, 3장에서 숙종년간 영악전의 폐지 배경과 정자각의 변화에 대해 고찰하고 4장에서 영조대부터 순조대까지 정자각이 축소·확대되어 결국 규격화되는 단계를 거치게 됨을 각 시기의 산릉도감의례를 통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자각의 기능과 건축규모가 시대별로 변화해왔음을 인식하고 현재 남겨진 정자각에 한정하여 조선왕릉 정자각을 규정해서는 안된다. 또한 그러한 변화는 국장을 간소화하는 과정에서 재궁이 정자각에 봉안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기능변화가 건물을 변화시켜왔음을 고찰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조선전기 영악전과 정자각의 기능과 건축형태

2-1. 영악전과 정자각의 기능

조선전기에 이루어진 국장의례에서는 각 의례의 단계별 성격에 따라 중심 공간을 별도로 구성하였다. 魂·魄이 함께 머무는 기간은 영악전을 중심으로 하고, 매장 의식이 끝나고 혼을 神主에 담은 의례는 길유궁에서 행하고, 산릉에서의 의식이 끝나고 반우한 후에 제사를 지내는 공간은 정자각이 중심이 된다.

영악전은 『국조오례의』에 정리된 국장의례 중 궁궐의 빈전에서 발인하여 산릉에 도착한 재궁⁸⁾을 모시는 장소로 기능한다.⁹⁾ 재궁이 발인하여 현궁으로 묻히기 전까지 하루 이틀

정도 재궁을 안치하고 궁궐의 빈전에서와 같이 조석상식의(朝夕常食儀)와 주다례(晝茶禮)를 행한다. 재궁이 현궁에 안치되는 날, 마지막으로 재궁을 모셔가기 전에 천전의식(遷奠儀)¹⁰⁾을 행한다.¹¹⁾

[표 1] 국장의례에 따른 영악전과 정자각의 기능

대상	기간	산릉			의례절차		궁궐
		조선전기	1674년 이후	준비공간	산릉	궁궐	
魂·魄	5개월	<산릉조성기간>				昇遐	빈전
	1·2일					영악전	
成殯							
發引							
魂	3년상	정자각	가정자각	가재실	成殯儀	혼전	
					遷奠儀		
	下玄宮						
	立主奠	虞祭					
	返虞						
	安陵奠	卒哭祭					
	朝夕常食						
	四時臘日俗節朔望享祀	四時臘日俗節朔望親享					
	禪祭						
		정자각		재실	四時臘日俗節朔望享祀		四時臘日俗節朔望親享

재궁이 현궁 안에 묻히고 나면 길유궁에서 우주(虞主)¹²⁾를 써 혼을 담은 입주전(立主奠)¹³⁾을 치루고 나면, 궁궐의 혼전을 향해 반

10) 천전의식(遷奠儀): 빈전이나 영악전 등에서 재궁을 이동할 때 재궁에 이동을 고하는 의례

11) 『국조오례의』, 「흉례」, 遷奠儀

12) 우주(虞主): 왕이나 왕후의 넋을 담은 위폐라 할수 있다. 뿔나무로 만들며 길이는 1자이다. 세자와 세자빈의 경우 신주(神主)라고 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조상례보편』, 민속원, pp71, 2008

8) 재궁(梓宮): 국장 시 임금·왕후의 시신을 담은 관이다. 왕세자 혹은 세자빈의 경우는 梓室이라 표현하고 격을 달리한다.

9) 『국조오례의』, 「흉례」, 發引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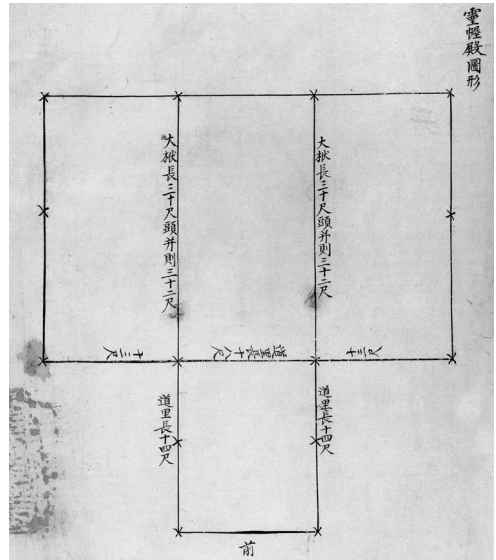
우(返虞)한다. 이때 영악전은 철거되고 정자각이 산릉의 중심이 된다. 정자각에서 안릉전(安陵奠)을 시작으로 삼년상 동안 조석상식과 사시와 납일·속절·삭망 등에 향사¹⁴⁾를 지내고 담제(禫祭)¹⁵⁾를 지내 삼년상이 끝난 이후에도 吉祭를 지내는 공간으로 영구히 존재하게 된다. 합장이 될 경우 정자각에서는 이미 길례가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가정자각을 새롭게 설치하여 삼년상을 치른다.

따라서 영악전과 정자각은 궁궐의 빈전과 혼전을 따로 조성하듯이 산릉에서 각각의 기능을 수용했다.

2-2. 영악전의 건축형태

산릉에서의 국장의례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로 하는 공간들은 임시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영악전은 임시공간이라고 하나, 재궁을 봉안하는 건물로 국장에서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정자각보다 더 큰 규모를 필요로 했다. 이러한 영악전의 조성은 산릉도감의궤에서 매우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¹⁶⁾ 이를 통해 영악전의 건축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

평면형은 丁字體를 기본으로 하여 정전3칸



<그림 1> 「靈輦殿圖形」,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장서각(영인본)

배위청 2칸으로 구성된다.¹⁷⁾ 정전은 정면3칸 측면은 합장보를 이용하여 두칸으로 어간 대보의 길이가 30자 가량 된다.

기둥은 정전에 10개 배위청에 4개를 사용하며, 길이는 16자~18자 정도 되는 재목을 사용하여 지중에 5자 정도 박아 세워지는 굴립주 형식이다. 기둥위에 보와 도리를 걸고, 장연과 단연으로 서까래를 올린 후 지붕을 덮는다. 지붕은 서까래 위에 유둔(油苫), 노점(蘆簾), 초둔(草苫), 고초부비개(篙草浮飛介), 고소망자(篙素綱子)등 바닥갈개로 쓰이는 넓은 장막류를 5겹 덮어 추가형태를 만든다.

정전의 정면 어간과 협간에 모두 분합문을 달고 신문에 분합문을 달아 정자각과 같이 한다.

조석을 사용하지 않은 것과 지붕재료만 다를 뿐 대부분의 건축형태는 정자각과 같다. 다만 규모에 있어서 내부 배설물에 따라 영악전이 더 큰 규모를 필요로 했다.

13) 입주전(立主奠): 재궁을 현궁에 내리고 나면 길유궁에서 우주(虞主) 정면에 '○○대왕'과 같이 묘호(廟號)를 쓰는 의식이다.

14) 臘日: 납향(臘享)하는 날. 동지 뒤의 셋째 술일(戌日). 조선(朝鮮) 시대(時代) 태조(太祖) 이후(以後)에는 동지 뒤 셋째 미일(未日)로 하였음.

俗節: 정한 제삿날 외(外)에, 절이 바뀔 때마다 사당(祠堂)이나 조상(祖上)의 묘에 차례(茶禮)를 지내는 날
朔望: 삭일과 망일, 곧 음력(陰曆) 초하루와 보름

15) 담제(禫祭): 초상(初喪)으로부터 13개월이 되어 첫 번째 기일이 되면 연제(練祭)를 지내고, 2주년(25개월)이 되어 두 번째 기일이 되면 상제(祥祭)를 지내고, 27개월 정도 되면 담제를 지낸다.(왕의 3년상의 경우),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조상례보편』, 민속원, pp323, 2008

16)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1601년)~『인선왕후산릉도감의궤』(1674년)까지 영악전의 건축부제와 내부배설되는 諸具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7) 『효종영릉산릉도감의궤』 1659년, 「조성소」, 靈輦殿以 丁字體造作

10 논문

[표 2] 산릉의궤에 나타난 영악전과 정자각의 건축규모

시기	의궤명칭	영악전				정자각			
		어간	협간	대보	배위청	어간	협간	대보	배위청
1601년(선조34)	의인왕후산릉도감의궤	15자	11자	30자	10자	14자	11자	25자	10자
1630년(인조8)	목릉천봉시의궤	15자	10자	32자	10자	14자	11자	25자	11자
1632년(인조10)	인목왕후산릉도감의궤	15자	13자	33자	?	부재	상세 기록되지	없음	
1649년(효종1)	인조장릉산릉도감의궤	18자	13자	30자 32자◇	14자	10자	8자	12자	11자◇
1659년(현종즉위)	(효종)산릉도감의궤	18자	13자	32자◇	18자	14자	13자	20자	?
1674년(현종15)	인선왕후산릉도감의궤	18자	13자	28자	18자	14자	13자	20자◇	?
1674년(숙종즉위)	현종송릉산릉도감의궤	靈幄殿則因傳教不爲造成				13자8치	11자 7자*	21자	

*표는 8칸 정자각으로 정전이 어간·협간·뒀간으로 5칸으로 구성되어 뒀간의 너비를 나타냄

◇표는 부재 머리포함 치수를 표시함

2-3. 영악전과 정자각의 건축규모

영악전과 정자각이 함께 지어지던 시기의 각 건물 규모를 살펴보면, 영악전이 정자각보다 규모가 크게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다. (표 3)을 통해 영악전과 정자각의 평면 규모를 비교해 볼 수 있다. 영악전 어간의 너비는 1650년(효종1) 인조장릉 조성 이전에는 15자로, 이후에는 18자 규모로 지어졌다. 대보는 28자~33자 사이로 지어졌으나, 머리포함 길이인 경우가 있어 대략 30자 정도라 생각할 수 있다. 반면 정자각은 어간이 14자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대보의 길이는 12자~25자 까지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정자각과 같은 의례의 중심이 되는 건물의 계획당시 정면 비례에 대한 고려는 매우 중요했을 것이다. 따라서 어간과 협간의 폭이 일정하게 유지된 것은 정면성에 대한 고려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자각의 대보의 길이에서는 일관성을 찾기 어려웠으나, 영악전에서는 정전 남북폭이 28자 이상의 공간을 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내부공간의 활용과 관련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2-4. 영악전의 내부 공간구성

영악전은 재궁을 봉안하는 건물로, 복신문

근처에 재궁을 봉안하는 찬궁¹⁸⁾을 설치한다. 찬궁 우측에 영침(靈寢)을 마련하고 찬궁 남쪽에 영좌(靈座)를 둔다. 영좌 앞으로는 제상(祭床) 4좌를 동서방향으로 일렬로 배설하고 그 앞에 향상(香床)을 둔다. 이러한 상황은 「정자각내배설도」¹⁹⁾를 통해 알 수 있다.

찬궁과 영좌, 제상, 향상은 남북축으로 일렬로 배치되는데 이들이 영악전 남북폭을 한정하는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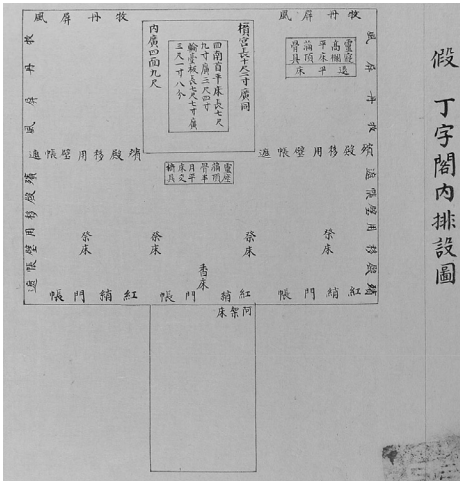
찬궁은 남북길이 12자, 동서 너비를 7자 5치 높이는 6자 5치 가량된다. 찬궁의 동쪽에 영침을 설치하고 남쪽에 영좌를 설치하는데, 이들은 모두 만정골²⁰⁾을 세우고 휘장을 달아 공간을 설정한다.

영침만정골의 크기는 길이 6자, 너비 3자, 기둥높이 6자이며, 영좌는 평상의 길이 7자 5치, 너비는 3자 4치, 만정골 기둥 높이는 6자

18) 찬궁(欝宮): 왕·왕후의 관을 현궁에 내리기 전까지 가매장하는 시설로 빈전과 영악전 등 재궁을 안치하는 건물에 설치한다. 세자·세자빈의 경우는 찬실(欝室)이라 하고 격을 낮추어 조성한다.

19) 정자각의 내부배설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1805년 『정순왕후산릉도감의궤』에서는 정자각이 영악전의 기능을 수용하여 국장의 중심 건물로 사용되는 시기의 내부배설에 대해 상세히 그리고 있다.

20) 만정골(滿頂骨): 만경진(滿頂巾)과 같은 휘장을 치기 위해 地方木과 기둥을 세워 만드는 골조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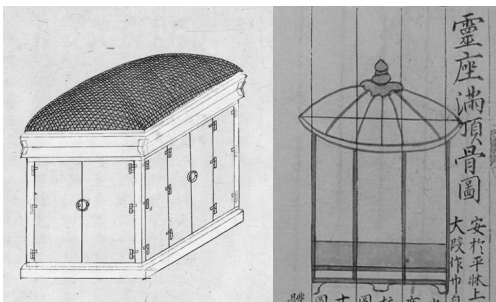


<그림 2> 영악전으로 사용되는 「假丁字閣內排設圖」 1805년 『貞純王后元陵山陵都監儀軌』, 규장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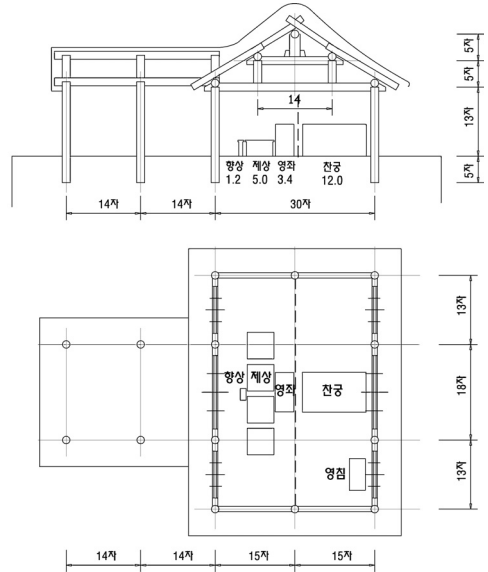
가 된다. 영좌 앞에 놓이는 제상 4좌와 향상은 『국조상례보편』의 규정에 따르면, 제상1개의 크기는 길이와 너비가 모두 5자로 동서방향으로 일렬 배치한다. 향상은 길이 2자2치, 너비 1자1치이다.

따라서 영악전 남북 길이는 찬궁(12자), 영좌(3자4치), 제상(5자), 향상(1자1치)을 남북방향으로 간격없이 배치할 때 최소한 21자 5치 정도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림 4는 산릉도감의궤를 바탕으로 영악전의 평면과 단면을 그린 것이다. 영악전 정전 내에 배설되는 가구의 규격에 따라 배치한 것이다.



<그림 3> 좌: 『正祖健陵山陵都監儀軌』, 「欝宮圖」(1800년), 규장각소장 우: 『顯宗殯殿都監儀軌』(1674년), 「靈座滿頂骨圖」 규장각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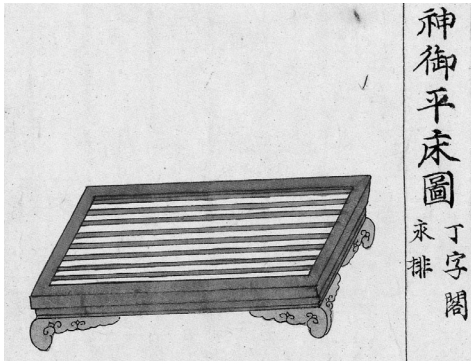
<그림 4> 『(인조장릉)산릉도감의궤』를 바탕으로 작성한 영악전 평면도와 단면도

2-5. 정자각의 내부 공간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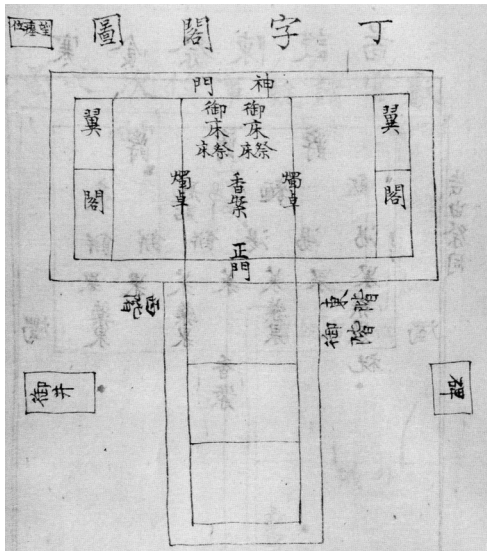
정자각은 신문 가까이 중앙에 신어평상(神御平床)을 배치하고 그 앞으로 제상(祭床)4좌를 동서로 일렬로 배치한다. 제상 남쪽에 향안(香案)을 두고 양쪽에 촉탁(燭卓)을 배치한다. 제상은 3년상을 치르는 동안은 4좌를 배치하나, 삼년상이 끝나면 2좌만 배치하고 나머지 2좌는 호조에 내린다.²¹⁾ 그림6은 정자각 내부배설을 보여주는 것이다. 신문 가까운 곳에 신어평상을 2좌 배치하고 제상이 2좌가 배열된 것으로 보아 왕과 왕비의 합장묘의 삼년상 이후 모습을 담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어평상은 별문지의 위에 배치하고, 크기는 길이 7자 너비 3자로 당주홍칠하고 유족평상으로 다리에는 구름문양을 조각한다.

제사를 위해 활용되는 정자각 내부 가구배설은 남북방향으로 10자 정도면 충분한 공간이 된다. 따라서 인조장릉 정자각의 남북길이가 12자 정도 규모로 충분히 제례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었다.

21) 『국조상례보편』 권4, 「成殯」



<그림 5> 『정조건릉산릉도감의궤』, 「신어평상도」, (1800년), 규장각(영인본)



<그림 6> 제례기간의 정자각내배설도 『효릉지』 「정자각도」 규장각 소장

3. 숙종년간의 영악전 폐지와 정자각의 변화

3-1. 영악전 폐지의 배경

조선초 『국조오례의』가 제정된 이후 지속 되어오던 영악전은 국장기간동안 재궁을 보관 하며, 국장의 중심공간으로 주요한 기능을 하였다. 그러나 1674년 숙종이 즉위하여 승릉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영악전을 짓지 않고 유사한 건물형태를 갖는 정자각을 이용하게 된다.

혼·백을 모시는 공간인 영악전과 혼을 위해 재사지내는 정자각을 궁궐의 빈전과 혼전에 비유한다면 이 두 공간이 산릉에서는 일원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숙종실록 기사에 따르면 영악전의 역사가 크기 때문에 백성에게 폐가 되니 조성하지 말고 정자각에서 재궁을 봉안하라는 명을 내린다. 22) 숙종은 즉위 당시 14살에 불과했다. 즉위하고 처음 행하는 정사에서 새로운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국장이라는 큰 행사에서 의례의 중심건물을 바꾸는 것은 혼자만의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실록의 기사에서 짐작할 수 있듯 당시 경제상황에 의한 사회의 요구였을 가능성이 크다

승릉이 조성되는 1674년(숙종즉위) 당시의 경제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다. 1673년(현종14) 3월부터 진행된 효종 영릉 천봉이 마무리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674년 2월 24일 인선왕후가 승하하고, 같은 해 8월18일에 현종이 승하한다.

인선왕후의 산릉이 조성되자마자 현종이 승하하여 승릉을 조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영릉 천봉 이후 연달아 일어나는 국장에 민간의 피해가 클 것을 염려하여 몇가지 결정이 내려진다. 숙종실록에서는 천릉하고 남은 舊寧陵의 석물을 승릉 조성에 재사용하는 것과 영악전을 짓지 않는 것에 대한 논의가 기록되어있다.

숙종즉위년 9월15일 기사에 따르면 구영릉의 석물을 새릉에 사용하여 민폐를 줄이려는 의견은 현종비였던 명성왕후의 의견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자전께서 민력이 고갈된 것을 염려하여 영릉에 묻힌 석물을 새릉에 씌으로써 민폐를 덜고자 하니 어떠한가?”²³⁾

22) 『숙종실록』 9월 17일 1번째기사

23) 『숙종실록』 즉위년 9월15일

명성왕후의 의견에 숙종이 따르고 있으며, 당시 신하들도 적극 찬성하는 기세였다. 명성왕후는 산릉의 입지를 정할때에도 결정권을 크게 행사한 듯 하며, 국장의 다른 부분에도 많은 결정을 내렸다.

『현종승릉산릉도감의궤』를 살펴보면 이외에도 가재실의 규모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 재실을 활용하고²⁴⁾, 가가의 규모를 줄이는 등 산릉의 공역을 줄이려는 다양한 노력이 있었다.

경제사정 외에 영악전 폐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1673년(현종 14)에 있었던 영릉 천릉의 전례이다.²⁵⁾

천릉시에도 재공을 현궁에서 꺼내어 잠시 보관하고 의례를 행한 후에 신릉(新陵)으로 옮겨 신릉의 현궁에 안치하기까지 영악전이 필요하다. 영릉을 천릉시에 舊陵과 新陵의 영악전을 조성하지 말고, 정자각에서 재공을 모시도록 하는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논의의 시작은 1674년 4월 9일(현종15) 김수홍의 발언에서 시작된 다.

수홍이 아뢰기를, 지난해 영악전의 제도가 규모가 높고 넓어 공역이 매우 심하다. 이번에 기둥과 보의 크기가 비록 작으나 보의 길이가 20여자가 되니 성빈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다. 다만, 배위청과 정전이 접하는 부분의 지붕이 큰비가 내린다면 비가 셀 우려가 있다. ²⁶⁾

24) 정정남, 「조선후기 산릉의 가재실과 정제실의 운영」, 한국건축역사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 pp.111, 2008.11

25) 『승정원일기』, 숙종 즉위년 9월 17일 (무인) 承傳色 口傳下教于領議政許積曰 今觀國葬擇日吉日 則十一日發引 十三日乃是下玄宮 則梓宮停留 只是一日 欲依上年遷陵時例 暫爲奉御于丁字閣 未知大臣之意 何如 領議政許積 口傳回啓曰 發鞞而下玄宮 其間日字不多 自上爲慮靈幄殿之弊 有此下教 聖意甚盛矣 第其間不無參酌舉行之事 摠護使方往都監 謹當通報 相議仰達矣 摠護使以承傳色口傳啓曰 昨日靈幄殿事 下教矣 臣其時 適往都監之坐 故領相 卽遣郎廳通報 臣答以發鞞後 奉御丁字閣 恐有役所鬧擾之弊 以是爲難便云矣 更思之 陵所畢役 在於發鞞之前 且以布帳障蔽其間 則無鬧擾不安之事 靈幄勿爲造成事 依聖教舉行 宜當矣 承傳色口傳 答曰 依啓

26) 『승정원일기』 현종 15년 4월 9일 (계묘)

4월에 이러한 논의가 있고 6월이 되어 민유중이 구릉에 정자각을 철거하지 말고 재공을 봉안하고, 영악전을 새로 짓지 않는 편이 좋을 듯 하다는 뜻을 아뢰어 현종이 허락한다. ²⁷⁾

이후 6월 20일에 현종이 영악전의 지붕을 유둔과 초둔으로 덮어 큰비가 내리면 비가 셀 우려가 있는데 소헌제사 상에서 비가 새었다고 하니 신릉에도 영악전은 설치하지 않도록 결정한다.²⁸⁾

1674년(현종 15) 영릉 천봉시 총호사였던 김수홍과 민유중은 영악전 폐지에 적극적이었으며, 이들은 승릉 조성시 총호사 김수항, 민정중과 형제지간이며, 민유중은 이때 빈전도감당상의 책임을 맡았다. 이러한 인력구성과 사회 전반이 영릉 천봉시에 시작된 영악전의 폐지가 승릉을 조성할 때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3-2. 정자각의 영악전 기능수용 방법

영악전은 내부배설 가구가 남북방향으로 길게 늘어서 기존에 28자 이상의 대보가 필요했던 건물이다. 이러한 공간을 정자각에 담기 위해서는 내부공간의 확장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공간확장의 요구를 숙종은 퇴구(退構)²⁹⁾라고 하는 임시공간을 사용하여 해결하였다.

壽興曰, 靈幄殿制度, 小臣, 圖形以來矣, 奉進于上前曰, 上年制度, 太爲高廣, 工役甚多, 今番則柱樑雖差小於上年, 楸長, 亦以二十餘尺爲之, 亦可周足於成殯矣. 且拜位廳, 與正殿相接, 爲丁字形, 故兩簷相接之處, 簷溜輻湊, 若值大雨, 滲漏可慮.

27) 『현종실록』 14년(1673 계축) 6월 12일(경술) 2번째 기사

28) 『현종개수실록』 27권, 14년(1673 계축) 6월 20일 (무오) 3번째 기사

29) 퇴구(退構): 영악전을 폐지하고 정자각에 재공을 모시면서 내부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자각 어간에 접하는 배위청 한 칸을 임시로 내부공간으로 사용한 것을 말한다. 숙종즉위년 승릉 조성시에 처음 사용되어 영조 33년에 『국조상례보편』을 정리하면서 이 제도가 금지된다.

30) 대보의 길이가 21자로 기록되고 있으며, 함장보가

14 논문

[표 3] 숙종즉위년(1674)~『국조상례보편』(1751년) 이전의 정자각 규모

시기	산릉	유형	退構	정전					배위청		
				칸수	대보 합장보	어간	협간	퇴칸	칸수	도리	보
1674년 숙종즉	현종 승릉	정자각	○	5	21자 10자5치	13자8치	11자5치	7자	3	9자5치	13자8치
1681년 숙종7	인경왕후 익릉	정자각	○	5	22자 10자5치	13자8치	11자5치	7자	3	9자5치	13자8치
1683년 숙종9	명성왕후 승릉	가정자각	○	5	21자 10자5치	13자8치	11자5치	7자	3	9자5치	13자8치
1688년 숙종14	장령왕후 휘릉	정자각	○	5	21자 10자5치	13자3치	11자5치	7자	3	9자5치	13자8치
1701년 숙종27	인현왕후 명릉	정자각	○	5	25자 12자5치	13자8치	11자5치	7자	3	9자5치	16자8치
1720년 경종즉	숙종 명릉	가정자각*	舊정자각	3	16자 8자	10자	8자	-	2	?	10자
1725년 영조1	경종 의릉	정자각	○	5	25자 ³⁰⁾ 12자5치	13자8치	11자5치	7자	3	9자5치	16자8치
1730년 영조6	선의왕후 의릉	가정자각	○	5	24자	14자	13자	?	3	?	17자
1698년 숙종24	사릉봉릉	정자각	√	5	13자6치	?	?	-	3	?	9자9치
1699년 숙종25	장릉봉릉	정자각	√	3	13자8치 6자9치	9자9치	7자9치	-	2	7자9치	9자9치
1718년 숙종44	愍懷嬪 묘소	정자각	√	3	14자	?	?	-	2	?	11자

*표는 국장시에 조성되는 가정자각에 재궁 불안하지 않고 舊정자각에 불안하기 하고 退構 조성
√표는 사후에 추존하여 릉을 조성한 경우로, 재궁을 정자각에 불안하지 않는다.

재궁 불안시 요구되는 내부공간을 위해 정자각 전체의 규모를 확장하기 보다는 정전에 맞대어 있는 배위청 한 칸을 내부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사항은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전교에 따라 영악전을 조성하지 않고 정자각에서 성빈을 하려하니 건물 규모가 작아 영악전의 모든 가구를 배설하지 못하니 배위청 1칸에 따로 假인방과 假지방 假벽선 假마루 좌우변에 각각 분합문을 4짝을 달고 전면에는 정전 어

간에 달아야할 분합문을 옮겨달아 사용하고 재궁이 산릉에 오른 후 다시 원위치에 옮겨달고 좌우변에 설치한 분합문과 기타인방과 지방·마루·벽선 등은 모두 일시에 철거하여 陵官에 넘겨주고 그중 분합문 4짝은 수시릉관 향청에서 이용하도록 한다.³¹⁾

배위청을 실내공간으로 임시로 구획하는 방

12자5치로 대보와 차이가 크며, 정자각의 전례를 명릉으로 삼고 있으며, 대보 2개에 사용된 대부등2조의 길이가 25자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정자각 정전 대보의 길이를 25자로 추정됨

31)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 조성소, 雜物總數
靈幄殿則 因傳教 不爲造成 而成殯 於丁字閣 故靈幄諸具 設於丁字閣 而間閣之大 不足及 於靈幄殿乙仍于 床卓諸具 排設之時 慮有不足之患 拜位廳 一間別設 假引防 假地防 假壁綰 假林樓 左右邊良中 各 掛先佐耳 四隻 前面則 以正殿御間 先佐耳 移掛爲有如此
梓宮上山陵後 卽爲還掛本處 而左右邊所設 先佐耳及其他 引防地防林樓壁綰等 物并皆一時撤去 傳授於陵官 其中先佐耳四隻則 移用於守侍陵官香廳所構處

식과 이에 사용되는 부재들의 철거 후 이용방식까지 상세하게 결정하고 있었다. 이 항목은 이후 『국조상례보편』(영조33년)이 정리되기 이전까지 산릉도감의궤에서 ‘퇴구의 조성’으로 정자각 부재가 나열되는 뒷부분에 같은 방식으로 반복되어 적용되었다.

1674년(숙종 즉위)부터 1757년(영조 33)까지의 정자각 규모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이 사이에 8번의 국장이 행해졌으며, 세 번의 추존릉의 조성이 있었다. 국장 중에 조성된 정자각과 가정자각은 모두 퇴구를 조성하고 있었으며, 명릉 조성시를 제외하고 모두 8칸 정자각³²⁾에 팔작지붕으로 조성되었다. 정자각의 규모도 정전 어간 13자8치, 협간 11자 5치, 퇴칸 7자이며, 배위청 보의 길이는 13자 8치, 도리 9자5치로 일체화 규격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중에 명릉만이 5칸 정자각³³⁾으로 칸의 규모도 유독 작게 조성된 것을 볼 수 있다. 명릉의 정자각과 가정자각의 관계와 재궁 불안 여부를 살펴보면 영약전의 기능 수용에 따라 정자각의 규모가 변화되었음을 확신할 수 있다.

1720년에 숙종이 승하하고 1701년에 조성된 인현왕후 릉(명릉)에 합장된다. 이때 산릉도감에서는 이미 정자각이 인현왕후의 신위를 봉안하고 있으므로 가정자각을 조성한다. 새롭게 조성되는 가정자각에 재궁을 봉안하기 위해 퇴구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1701년에 조성된 舊정자각에 퇴구를 조성하고 재궁을 이

곳에 봉안한다. 이러한 문제는 왕과 왕후의 격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왕과 왕후의 합장일 경우 먼저 조성된 정자각에서는 이미 신위를 모시고 있어, 이후에 합장되는 상례를 치를 수 없다. 따라서 3년상까지 의례를 행할 공간으로 가정자각을 조성한다. 그러나 왕비가 먼저 매장된 상태에서 왕의 국장이 있을 때 왕의 재궁이 가정자각에 들어가야 하지만, 가정자각이 정자각보다 격이 낮기 때문에 왕의 재궁을 정자각에 모시고 왕비의 신위를 잠시 가정자각에 이안하여 국장을 치르게 된다. 숙종 승하 후에 조성된 명릉이 이러한 경우로, 정자각은 1701년에 조성되었기 때문에 1720년에는 가정자각을 조성하고 9월13일에 인현왕후의 신어평상을 가정자각으로 옮기고, 왕의 재궁을 정자각에 봉안한다. 따라서 구정자각에 재궁을 봉안하고 새롭게 짓는 가정자각은 재궁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어간 10자, 협간8자, 남북길이 16자의 협소한 공간으로 조성된다. 이러한 상황은 선의왕후 국장시 영조가 가정자각의 규모에 대해 고민하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경자년(1720년, 경종즉위) 등록은 대왕상으로 가정자각에 왕후신위를 이안한 후에 구정자각에서 재궁을 봉안하여 가정자각 제도가 협소하였다. 그러나 이번은 왕비상으로 대왕의 신위를 가정자각에 이안하는 일은 곤란하다. 가정자각에 찬궁을 배설해야하니 광대해야한다. 따라서 계해년(1683년, 숙종9년)의 예를 따를 수 없고, 계해등록에 따라 가정자각을 8칸으로 하고 계해년의 예에 따라 목물소입을 결정한다. 34)

32) 8칸정자각: 정자각 정전3칸 좌우 익각 각1칸에 배위청 3칸으로 구성된 제도를 8칸정자각이라 한다. 이는 현종14년에 광릉의 제도에 따라 영릉을 여주로 천봉할 당시에 적용하기 시작하여 숙종년간에 지속하여 적용되었으며, 영조 28년 『어제국조상례보편』을 작성할 당시에는 산릉 정자각 제도는 8칸이며, 묘소의 정자각제도는 5칸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33) 5칸정자각: 정자각 정전3칸에 배위청 2칸으로 구성된 제도를 8칸정자각에 대응하여 표현하였다. 이는 영조 33년 정성왕후 홍릉조성시부터 규정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34) 『선의왕후산릉도감의궤』, 「조성소」, 庚戌七月初八日 昨日稟目題辭內今番則異於庚子更爲商量以稟亦爲有臥乎所取考庚子瞻錄則大王喪後王妃神位移安於假丁字閣 而梓宮奉安於舊丁字閣故假丁字閣制度自爾狹少 今番則王妃喪後大王神位移安於假丁字閣 事體重難 假丁字閣 必煩廣大以爲 攢宮排設則 不可依庚子年例乙仍于 取考癸亥瞻錄則假丁字閣乃爲八間此庚子假丁字閣所入 木物 甚多 今番當依癸亥年例而 自該所不取擅便何以爲之爲乎乙喻指一分付

16 논문

이와 같은 예는 숙종대에 이루어진 세 번의 추존릉의 조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사릉, 장릉, 민회빈묘 등이 사후에 추존되어 조성된 것으로 정자각에 재궁을 봉안하지 않는다. 이때에 지어진 정자각의 규모도 정전 남북길이가 13자 6치에서 14자 사이로 조성됨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서 정리하고 있는 숙종 즉위년부터 영조 33년 『국조상례보편』이 완성되기 전까지 정자각의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정자각은 총 8칸으로 정전 좌우에 익각이 조성되며, 배위청이 세 칸으로 형성된다. 정전의 크기는 어간 13자 8치, 협간 11자 5치, 퇴칸 7자이며 배위청 3칸은 도리 9자 5치, 보 13자 8치로 구성되어 숙종즉위년 이후 규격화됨을 확인하였다. 정자각에서 재궁을 봉안하여 정전 남북길이의 확보가 요구되었으나, 이러한 해결방식으로 퇴구가 임시 조성되었다. 이시기에 예외적으로 정자각 규모가 작은 것이 눈에 띄는데, 이들은 모두 재궁을 봉안하지 않은 사례로 확인되었다.

4. 『국조상례보편』 편찬 이후 정자각의 변화

4-1. 영조대 정자각 규모 축소

영조대에 격이 다른 다양한 국장이 일어난다. 이에 각 시기마다 전례를 찾아 적용하는데 논의가 번거로우니, 상례만을 모아 『국조상례보편』을 정리한다. 『국조상례보편』은 이후 산릉 조성에 중요한 참고가 되며 정자각에 대한 규정이 실려있어 정자각 변화에도 중요한 기점이 된다. 이 책은 총 6권과 별도의 도설편으로 정리되고 있다. 1권은 빈전에서 의 습과 염, 복제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으며, 2권에

서는 산릉으로 발인하여 졸곡제를, 3권은 혼전과 산릉에서의 제례에서 종묘에 부묘하는 의례까지를 담았다. 여기까지는 『국조오례의』와 같이 의례서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4권~6권은 영조의 하교를 그대로 상황별로 옮겨놓듯 편집하고 있다. 4권은 빈전에서의 의례를 중심으로 다루고, 5권에서는 산릉으로 발인하여 부묘까지의 상황에서 내린 수교를 정리하고 있다. 6권은 의소세손의 상례 때의 수교를 첨부하였다.

이 책은 1757년(영조 33)에 발간되긴 했으나, 영조28년에 완성한 것으로 의례서를 작성하던 당시에 진행된 의소세손묘소 조성시의 수교를 첨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영조 33년에 정성왕후 산릉조성과 인원왕후 명릉조성 당시의 수교를 4·5권에서 다루고 있으며, 실제 산릉 조성에서 적용된 사례를 다루고 있어 내용이 상세하다.

이 『국조상례보편』에서 정자각에 대한 규정이 기록되는데, 이는 丁丑년에 일어난 정성왕후와 인원왕후의 산릉 조성시 논의된 내용이다.

첫째는 8칸 정자각 제도를 폐지하고 등과 묘에 모두 5칸 정자각을 적용한다. 앞에서 숙종이후 조성된 정자각은 8칸 정자각으로 일체 적용되어 영조년간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정성왕후 홍릉 조성시에 정전 양쪽 익각을 만들지 않고, 정전3칸 배위청 2칸의 5칸 정자각으로 규정한다.³⁵⁾ 이는 1752년(영조 28)에 서술한 『어제국조상례보편』에서 8칸은 산릉 정자각 제도로 하고, 5칸은 묘소 정자각 제도로 하여 차등을 두겠다는 것과 변화된 결과였다. 이에 홍계희는 이전에 서술한 절목과 다르며, 숙종년간부터 8칸 정자각의 제도를 따랐는데, 이번에 갑자기 바꾸기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하지만, 결국 영조의 뜻에 따라 모두 5칸

以爲舉行之地何如稟

35) 『국조상례보편』 4권, 「治葬」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 「啓辭」, 丁丑年3月23일

정자각을 적용하게 된다.

두 번째는 정자각 규모의 확정한다. 역시 정축년의 산릉조성과정에서 결정된다. 빈전내부 배설에 대한 하교와 함께 찬궁과 영좌만정골평상, 신좌교의, 혼백함, 제상과 향상 등의 규격을 정하고, 정자각의 남북 內廣은 20자 2치로 한다고 규정한다.³⁶⁾ 이러한 내용을 도설에서 정자각 그림과 함께 어간 13자2치, 협간 11자2치5푼, 남북폭 20척 6촌으로 간략하게 정리하고 있다.

『국조상례보편』이 간행되는 정축년에 두 번의 국장이 발생한다. 1757년(정축) 정성왕후(영조의 원비)가 2월 15일에 승하하고 한 달이 지나 3월 26일에 숙종의 계비였던 인원왕후가 승하한다. 이 둘의 국장은 『국조상례보편』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에 정자각의 규모 축소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752년에 상례를 정리하여 『어제국조상례보편』을 완성할때는 의례 위주의 정리가 이루어졌으며, 陵과 園의 격을 달리하는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영조 33년에 한 달 간격으로 발생한 두 국장으로 인해 민력이 소진될 것과

정자각과 같은 주요건물의 목재 수급의 문제 등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들은 정자각 규모를 축소하여 최소한의 공간으로 규정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정축년의 국장을 치른 후에 추가된 『국조상례보편』 4권과 5권에서는 실제 산릉 조성에 관한 규정들이 기록될 수 있었다.

정성왕후는 초장이었기 때문에 정자각을 조성하고 인원왕후는 이미 숙종의 국장시에 명릉을 조성한 곳에 합장되는 것으로 가정자각을 조성하였다. 정성왕후의 정자각과 인원왕후의 가정자각 모두 남북폭을 20척 6촌으로 건축된다.

정자각에서 치르는 안릉전 이후의 제사는 신어평상을 중심으로 내부배설이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20척 6촌이면 충분한 공간이다. 그러나 재궁이 현궁에 묻히기 전에 재궁을 모시는 영악전의 역할을 하는 기간에는 공간이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숙종시기에는 배위청에 퇴구를 설치하여 내부공간을 확대했으나, 영조는 퇴구를 설치하지 않고, 정자각 내에 상탁을 모두 배설하도록 규정한다.³⁷⁾

이때 정자각 내에 배설되는 상탁의 규격은 정해졌으나, 찬궁의 규모는 각 재궁의 길이에 2자를 더하여 만드는 것으로 두 국장의 경우 재궁의 규모가 12자보다 작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1805년 정순왕후 재궁이 10자 2치로 조성된 것으로 보아 10자~12자 사이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때 정자각은 재궁을 배치하고 그 앞으로 영좌와 남북길이 5자의 제상을 두고 1자1치의 향상을 배치하면 배위공간없이 가구배설만으로 내부공간이 팍 들어맞게 건축된 것이다.

[표 4] 국조상례보편(1752년)~1773년 정자각 규모

시기	산릉	유형	정전			배위청	
			칸 수	대보 합장보	어간	칸 수	보
1755년 영조31	順懷世子 순강원	정자각 √	3	15자	13 자	2	12 자
1757년 영조33	정성왕후 弘陵	정자각	3	20자5치		2	
1757년 영조33	인원왕후 明陵	가정자 각	3	20자6치 10자3치	11 자	2	13 자
1762년 영조38	장조 영우원	정자각	3	17자		2	11 자

√표는 사후에 추존하여 릉을 조성한 경우로, 재궁을 정자각에 봉안하지 않는다.

36) 『국조상례보편』 4권, 「成殯」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 「啓辭」, 丁丑年3월16일

37) 『정성왕후산릉도감의궤』 下, 「造成所」 稟目秩, 丁丑 二月 十六日
因傳教 勿設遺構 牀卓并爲排設 於丁字閣殿內事

4-2. 정조대 정자각 규모 확대

1774년 정조가 즉위하여 23년간의 재위기간 중 국장이 두 번 있었고,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소를 현릉원으로 승격하여 조성하는 공사가 있었다.

정조가 처음으로 조성한 능은 영조의 원릉이다.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조성소」에서 건축 소요 물량은 치수를 기입하지 않고, 원목의 개수만을 적고 있어 쉽게 알 수 없었다. 정자각에 사용된 대보는 대부등 2개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이문질」에서 경기감영 문서를 통해 정자각 대보에 사용되는 대부등의 길이가 각 28자이며 말원경이 3자임을 후록에 기록하고 있었다.³⁸⁾ 배위청 보에는 중부등 2개를 사용하였는데 그 길이는 18자이며 말원경이 2자 7치였다. 따라서 원릉 정자각 어간의 크기는 18자(보머리 제외할 때 16자) 정도 되며, 남북폭은 28자(보머리 제외할 때 26자)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정조 13년에 조성된 현릉원에서 정자각의 규모를 살펴보면 정자각 정전 3칸 배위청 2칸이며, 정전의 대보는 대부등 2주, 길이 29자 원경 1자8치의 부재를 사용하였다. 배위청 대보는 중부등 2개를 사용하는데 길이 14자 원경 1자3치 크기 부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현릉원 정자각 어간 너비는 14자에 남북방향 29자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국조상례보편』에서 정자각 남북길이를 20자 6치로 규정하고 1757년(영조33)의 두 번의 국장을 치르는데 적용하였던 전례에도 불구하고 정조년간에는 28~29자의 정자각 정전 대보를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영조 원릉을 조성할 당시 전례로 삼았던 것은 1757년(丁丑,

[표 5] 정조 즉위기간 정자각 규모

시기	산릉	유형	정전			배위청			
			칸 수	대보 합장보	어간	협간	칸 수	도리	보
1776년 정조즉	영조원릉	정자각	3	28자			2		18자
1786년 정조10	문효세자효창원	정자각	3	15자	11자	9자	2		
1789년 정조13	장조현릉원	가정자각	3	29자 14자	14자	15자 3치	2	12자	14자

영조33) 등록이었다. 대부분의 공사에서 정축년의 전례를 따랐으나, 정자각 대보의 길이는 따르지 않고 있다. 이는 20자 6치 안에 정자각의 기능을 담기에 어려웠기 때문이다.

앞의 두 번의 공사 외에 1786년(정조10)에 그의 첫째 아들인 문효세자의 묘를 조성하는 일이 있었다. 세자의 묘는 왕과 왕비의 릉(陵)에 격을 낮춰 원(園)으로 조성하는데, 정조의 뜻에 따라 더욱 간소하게 능역을 조성하는 예가 발생한다.

이때 정자각의 남북길이는 15자로 형성하고 부족한 공간 확보를 위해 배위청 한칸에 백목갑장을 설치하여 임시 내부공간으로 사용한다. 이러한 방식은 재궁설치기간 내부공간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숙종대에 퇴구를 조성하던 것과 유사한 방법이다. 문효세자 묘를 조성할 때에는 찬궁을 조성하지 않고 만정골을 이용하여 幄次로 대신하였던 것과 같이 퇴구의 형성대신 백목갑장을 둘러 임시 내부공간으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순조대 정자각 사용에 영향을 준다.

38)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移文秩」, 丙申4月初6日 京畿監營了 『영조원릉산릉도감의궤』, 「造成所」, 丁字閣五間所入木物秩

丙午5月20日

승지가 아뢰기를 의소묘 정자각은 3칸 이고 대량이 2칸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할까요? 하니 정조가 답하기를 정자각은 3칸으로 하고 대량은 한 칸반으로 하고 평상, 제상의 체제는 의소묘에 준하여 체감하라³⁹⁾

4-3. 순조대 정자각 규격화

순조가 즉위하는 1800년 정조건릉을 시작으로 정자각의 '규격화'가 일어난다.

정조 건릉 정자각은 정전3칸 배위청 2칸 총 5칸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전의 어간 14자, 협간 12자, 남북길이 24자 규모이며, 배위청은 남북으로 24자, 동서로 14자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정자각의 규모는 정순왕후 원릉의 가정자각⁴⁰⁾과, 순조 인릉, 철종의릉까지 100여년간 조성된 정자각에 일괄 적용된다.

정자각 남북길이 24자라는 수치는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찬궁을 중심으로 영침과 영좌를 배설하고 제상을 두는데 최소한 필요공간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拜禮의 공간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위청 한 칸에 백목갑장을 설치하여 임시로 내부공간화 하여 사용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퇴구에 백목갑장을 설치하는 방식은 문효제자묘 조성시의 예에서 이미 적용된 바 있다.

정자각이 영악전 기능을 수용하면서 남북의 공간확보가 정자각 계획에 큰 영향을 미쳐왔으며, 정자각의 배위청을 국장기간동안 임시로

내부공간으로 구성하기도 하고 내부배설물을 줄이거나, 정자각 정전의 규모를 확대해보는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였으나, 결국 내부배설물을 위한 최소공간으로 24자 남북폭을 규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자각의 규격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 중에 중요한 요인은 산릉도감의궤에 도설의 발달이라 할 수 있다. 순조 즉위년에 조성된 정조건릉부터 의궤에 「정자각도」가 실리고 그림과 함께 정자각의 규모에 대한 설명이 간략하게 정리된다. 또한 「유문도」를 통해 정자각이 국장기간동안 영악전의 기능으로 활용되고 서쪽에 길유궁이 배치되고 그 주변으로 유문이 설치되는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또한 1805년 정순왕후 원릉을 조성할 때에 「가정자각내배설도」가 처음으로 의궤에 수록되어 찬궁과 영좌, 제상 등이 정자각 안에 배치되는 상황을 그려두고 있다.

1805년 이후 산릉도감의궤에서 「(가)정자각도」, 「유문도」, 「(가)정자각내배설도」 등이 수록되어 정자각의 규모와 국장기간 중의 주변 배치, 찬궁이 안치된 내부배설 상황 등을 그림으로 남기고 있어 이후에 쉽게 참고가 되었을 것이다.

또한 『국조상례보편』에서 제상과 향탁 등을 규격화 하고 있으나, 찬궁은 재궁 크기에 2자의 여유를 갖도록 하여 일정한 수치로 확정하지 말도록 했다. 그러나 순조대에 오면 찬궁의 크기가 너비7자 길이 12자 높이 6자5치로 규격화 된다. 이는 정조건릉의 사례에 기준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도 「(가)정자각내배설도」에 찬궁의 크기가 명기되고 있어 이후에 적용이 쉬워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도설의 등장과 상세화로 인해 순조대에 정자각은

39) 『문효제자묘소도감의궤』, 「營造」, 丙午5月20日 承旨與魂宮都監堂上 墓所都監堂上 入侍時 墓所都監堂上 朴明源所啓 懿昭墓 丁字閣 爲三間而 大樑爲二間矣 今番則 何以爲之乎 上曰 丁字閣以三間 廣爲之大樑 則以間半爲之平床祭床體樣此 懿昭墓準此 遞減可也

40) 『정순왕후원릉산릉도감의궤』 1805년, 도설에서는 「가정자각도」를 그리고 있으며 가정자각 남북폭이 20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조성소」 乙丑年 3月初3일의 기록에서 정자각에 수용되는 물목을 기록한 부분에 대보 2개 각 길이 25자이며, 합장보 12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24자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20 논문

[표 6] 순조즉위년(1800)~고종27년(1890)까지의 정자각 규모

시기	산릉	유형	도설	정전				배위청			찬궁 크기
				간수	대보	어간	협간	간수	도리	보	
1800년 순조즉	정조 건릉	정자각	정자각도, 찬궁도 신어평상도, 유문도	3	24자	14자	12자	2	12자	14자	7×12 6자5치
1805년 순조5	정순왕후 원릉	가정자각	가정자각도, 찬궁도 신어평상도, 유문도, 가정자각배설도	3	24자	14자	12자	2	12자	14자	長·廣 10자2치
1815년 순조15	헌경혜빈 현릉원	가정자각	가정자각도, 찬궁도 신어평상도, 유문도, 가정자각내배설도, 윤여배설도	3	24자	14자	12자	2	12자	14자	長·廣 10자2치
1822년 순조22	현목수빈 휘경원	정자각	정자각도, 찬궁도 신어평상도, 유문도, 정자각내배설도, 윤여배설도	3	24자	14자	12자	2	12자	14자	7×12 6자5치
1830년 순조30	익종 연경묘	정자각	정자각도, 찬궁도 신어평상도, 유문도, 정자각내배설도, 윤여배설도	3	24자	14자	12자	2	12자	14자	7×12 6자5치
1834년 현종즉	순조 인릉	정자각	정자각도, 찬궁도 신어평상도, 유문도, 정자각내배설도, 윤여배설도	3	24자	14자	12자	2	12자	14자	7×12 6자5치
1843년 현종9	효현왕후 경릉	정자각	정자각도, 찬궁도 신어평상도, 유문도, 정자각내배설도, 윤여배설도	3	24자	14자	12자	2	12자	14자	7×12 6자5치
1849년 철종즉	헌종 경릉	가정자각	가정자각도, 찬궁도 신어평상도, 유문도, 본릉정자각내배설도*, 윤여배설도	3	24자	14자	12자	2	12자	14자	7×12 6자5치
1857년 철종8	순원왕후 인릉	가정자각	가정자각도, 찬궁도 신어평상도, 유문도, 정자각내배설도, 윤여배설도	3	24자	14자	12자	2	12자	14자	7×12 6자5치
1863년 고종즉	철종 예릉	정자각	정자각도, 찬궁도 신어평상도, 유문도, 정자각내배설도, 난간평상배설도41)	3	24자	14자	12자	2	12자	14자	7×12 6자5치
1878년 고종15	철인왕후 예릉	가정자각	가정자각도, 찬궁도 신어평상도, 유문도, 정자각내배설도, 윤여배설도	3	24자	14자	12자	2	12자	14자	7×12 6자5치
1890년 고종27	신정왕후 수릉	가정자각	가정자각도, 찬궁도 신어평상도, 유문도, 정자각내배설도, 윤여배설도	3	24자	14자	12자	2	12자	14자	7×12 6자5치

*표는 국장시에 조성되는 가정자각에 제공 불안하지 않고 舊정자각에 불안하여 「본릉정자각내배설도」를 그림.

적절한 최소의 공간으로 남북폭 24자로 확정된 것이라 추정한다.

5. 맺음말

숙종이 즉위하기 전까지 조선왕릉의 조성시에 정자각과 함께 영악전이 독립된 구조체로 규모있게 지어졌음을 각 산릉도감의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숙종 즉위년에 승릉을 조성하면서 영악전을 짓지 말고 이를 정자각에서 행할 것을 결정한다. 이때부터 정자각은 안릉전 이후 행해지는 제사를 위한 기능 이외에 영악전에서 행해지던 재궁을 모시는 공간으로 기능이 확대된다.

영악전의 기능 수용은 찬궁배설로 인해 남북폭에 대한 확보가 중요 논점이 된다. 숙종대에는 기존 정자각의 규모를 유지하되 국장기간에 임시로 배위청 한 칸을 실내공간으로 활용하는 퇴구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였다. 이는 영조대까지 계승된다. 그러나 1757년(영조33)에 간행된 『국조상례보편』에 정자각 규모를 규정한다. 숙종대에 지속되어온 8칸 정자각을 5칸 정자각으로 축소하고, 일시적으로 조성하였던 퇴구를 만들지 말고 정자각 내에서 모두 배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정자각의 남북 길이를 20자 6치로 규정하고 「도설」에서 정자각도를 제시하여 어간 13자 2치, 협간 11자 2치 5푼으로 크기를 정하였다. 이는 정성왕후 흥릉과 인원왕후 명릉 조성시에 적용되었다. 그러나 정조대가 되어 오히려 정자각을 영악전 규모만큼 확대하여 영조 원릉과 장조 현릉원 조성시에 남북길이 28자 정도 되는 사례가 발생한다.

이러한 단계를 거쳐 순조 즉위년에 조성되는 건릉부터는 정자각의 정전 어간 14자, 협간 12

자, 남북길이 24자로 하고 배위청 보방향폭 14자 도리방향12자 규모로 1890년(고종27) 신정왕후 수릉 조성시까지 일제히 규격화 되어 적용된다. 이때 남북길이 24자는 靈幄諸具를 설치하는데 최소한의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다.

결국 영악전과 정자각이 숙종 즉위년 이후 일원화 되면서 정자각의 건축계획에서 남북공간의 문제가 중요하게 여겨졌으며, 그 해결방법은 공간의 확대와 축소를 거치면서 순조 이후 24자의 공간으로 규격화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숙종즉위년인 1674년부터 1890년까지 정자각은 220년 동안 영악전의 기능을 수용하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변화해왔다.

변화과정에서 큰 기점이 되는 시기는 숙종 즉위년과 1757년(영조33) 순조즉위년으로 볼 수 있다. 그중 1675년(숙종 즉위)과 1757년(영조33)은 두 번의 국장이 같은 해에 발생하면서 기존의 제도를 축소하게 되는 시점이 된다. 결국 국장이라는 국가의 중대한 의례에서도 당시의 경제상황과 민간의 피해를 고려하여 제도의 간소화 과정을 겪어왔음을 인식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懿仁王后裕陵山陵都監儀軌』, 1601년
2. 『仁祖長陵山陵都監儀軌』
3. 『孝宗寧陵山陵都監儀軌』
3. 『寧陵遷陵都監儀軌』, 1673년.
4. 『仁宣王后山陵都監儀軌』, 1674년 .
5. 『顯宗崇陵山陵都監儀軌』, 1674년.
6. 『英祖元陵山陵都監儀軌』, 1774년.
7. 『文孝世子墓所都監儀軌』, 1786년.
8. 『顯隆園園所都監儀軌』, 1789년.
9. 『正祖建陵山陵都監儀軌』, 1800년.
10. 『貞純王后元陵山陵都監儀軌』, 1805년.

41) 난간평상배설도: 윤여배설도와 같음

22 논문

11. 조선왕조실록.
12. 승정원일기.
13. 『국조오례의』, 법제처.
14. 국립문화재연구소, 『국조상례보편』, 민속원, 2008.
15. 『화성성역의궤건축용어집』, 경기문화재단, 2007.
16. 김동욱, 「조선조 산릉 정자각의 연원 소고」, 한국건축역사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 2008.5.
17. 김동욱, 「顯隆園의 입지선정과 원침계획에서 正祖의 역할」, 건축역사연구, 2008.10.
18. 김왕직, 「조선왕릉 8간 정자각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 2008.5.
19. 정정남, 「조선후기 산릉의궤를 통해본 정자각의 도배와 포진」, 한국건축역사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 2008.5.
20. 정정남, 「조선시대 산릉의 가재실과 정재실의 운영」, 한국건축역사학회추계학술발표대회, 2008.11.
21. 홍석주, 「정자각과 가정자각의 조성원칙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 2008.5.
22. 신지혜, 「조선시대 능제에서 영악전의 기능과 건축형태」, 한국건축역사학회춘계학술발표대회, 2009.5.

The study for changes of plane at the Jeongjagak(丁字閣) accepting functions of the Yeongakjeon(靈幄殿)

Shin, Ji-Hye

(Ph.D Student, graduate school of Kyonggi Univ.)

Abstract

The "Jeongjagak(丁字閣, T shaped building)" was important building from Goryeo Dynasty to Joseon Dynasty. For long period, the scale and form of the building had been changing bit by bit. The change of building results from the function. As the Jeongjagak accepted the functions of the Yeongakjeon(靈幄殿), there appeared changes of plane. The main function of Yeongakjeon was suppling space for the dead king's coffin.

The Yeongakjeon was not built in the first year of King Sukjong(1674). At that time, the Jeongjagak was responsible for the function of the Yeongakjeon as an alternative. Starting from this, the Jeongjagak was used as space for the dead king's coffin. Because the coffin should place on from south to north, it demanded long inner space in south-north direction. Therefore the effort to make enough length in south-north direction was begun from the first year of King Sukjong(1674).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the Toigu(退構) was made from the reign of King Sukjong to the 28th year King Youngjo(1852). The Toigu was temporary inner space which was made in one compartment at the Baewichung(拜位廳, the part of the Jeongjagak). But the length of the Jeongjagak's south-north direction was reduced to 61.8m(20尺6寸) at the 33th year of King Youngjo(1857) when the 『Gukjosangryebopyon(國朝喪禮補編)』 was completed. Also it extended to 84m(28尺) during the reign of King Jeongjo(1774~1800). Following these process of extension and reduction, the length was standardized as 72m(24尺) at the reign of King Sunjo(1800~1834).

These facts explains that the main cause of plane change at the Jeongjagak was acceptance of functions that was used as space for the dead king's coffin. Also, the important points of change at the Jeongjagak were the first year of King Sukjong, the 33th year of King Youngjo and the first year of King Sunjo.

When it was the first year of King Sukjong and the 33th year of King Youngjo, there were two national funerals. Because of concern about the increasing labor and tax of the nation, the scale of the Jeongjagak was changed to decreasing size. Due to the improvement of drawings and annotation on a Eugwe(儀軌) at the first year of King Sunjo, the size of Jeongjagak was standardized.

Keywords : Jeongjagak, Yeongakjeon, Sukjong, Gukjosangryebopyon
